

#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가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연구

최장원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A Review of the Legal Nature that Users of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Obtain and th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Internet Problems or Network Errors

JangWon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iduk University

**요약** 본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과 가상통화를 보유한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앙 당국이나 중개인이 거래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고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기존의 금융시장과는 달리,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의 기술에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상통화의 특수성은 화폐, 금전, 금융상품 중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수단에 적용되는 법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상통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법체계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본 연구가 기여한 바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증권시장과 같은 보호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용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관리 및 시스템 규제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Abstract** This thesis covers legal aspects of the crypto-currency exchange and the legal rights of crypto-currencies holders. Unlike financial markets in which central authorities or intermediaries determine the validity of transactions and manage records, crypto-currency markets utilize a decentralization system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Such distinct characteristics distinguish crypto-currency from currency, notes, or financial instruments. Therefore, we need to check closely the legal principles that are applicable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users possess rights indirectly through the crypto-currency exchange. However, we should look at whether crypto-currency can be an object of ownership. This research found that legal protection for crypto-currency exchanges are limited. Domestic laws have many shortcomings to protect users' rights. This study found that users who incurred damages due to internet computation errors at exchanges require a protective system like stock markets. Therefore, studies on the legal controls and system regulations are required to protect users' rights. Also, crypto-currency information exchanges keep inside and protections for users' private information need to be further examined.

**Keywords** : Virtual Currency, Exchange, User, Blockchain, Network Error, Legal Nature

---

\*Corresponding Author : jang-Won Choi(Uiduk Univ.)

Tel: +82-54-760-1134 email: jwchoi@uu.ac.kr

Received June 19, 2018

Revised (1st September 6, 2018, 2nd October 8, 2018, 3rd October 23, 2018, 4th October 24, 2018)

Accepted November 2, 2018

Published November 30, 2018

## 1. 서론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가치 상승에 따라 그 배후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7년 6월,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Realizing the Potential of Blockchain)”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이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교환함에 있어서 미증유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EF, 2017). 블록체인 기술은 기본적으로 중앙 통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는 특징 때문에 금융, 투표, 복지, 교육 등과 같은 공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Fig. 1은 일련의 거래정보를 온라인 P2P(peer-to-peer) 네트워크 분산하여 공개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고 새로운 거래가 생길 때마다 공동으로 기록하는 기술 분산원장방식을 특징기관의 중앙서버 관리 방식과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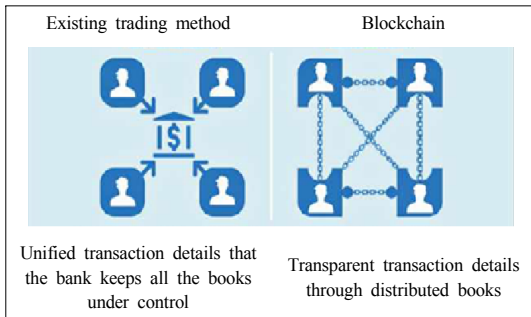


Fig. 1. Existing trading method versus blockchain method(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04.)

그런데 세간의 관심은 블록체인·가상통화 기술 고유의 가치보다는 가치변동에 따른 수익의 실현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개설되어 있고 엄청난 액수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입·출금 제한, 해킹, 전산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피해 금액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11월 12일 있었던 ‘빗썸 비

트코인 캐시(BCH)’ 사태를 들 수 있다. 비트코인 캐시는 하루 전날 100만원 정도의 거래시세를 유지하다가 12일 오후가 되면서 거래가가 280만원까지 급등하였다. 그런데 거래가가 280만원으로 치솟았던 오후 3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빗썸 이용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가 없었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접속자 수가 과도하게 몰렸고 결국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접속이 가능해진 오후 5시 40분에는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가격은 167만원까지 하락하였다. 그런데 빗썸은 시스템 정상화를 명목으로 매수·매도 거래를 일괄 취소하였다. 이 사태에 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카페가 개설되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희망의사를 밝힌 이용자만 해도 1,470명을 훌쩍 넘겼다. 그 후 실제로 다수의 이용자들이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한국금융, 2017).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의 조사분석을 살펴보면 비트코인 관련 범죄,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변화, 의사결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다.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아직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성격이나 책임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차별성은 가상통화의 개념 및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을 알아본 뒤 전산장애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가상통화와 거래소의 개념 및 법적 성격

### 2.1 용어 및 개념 정리

최근 들어 국내외에서 투기 열풍이 일어 화제가 되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결제수단에 대해 어떤 용어로 칭하여야 할지 혼란이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Cryptocurrency(암호화된 화폐)’로 지칭하였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가

상화폐'라는 용어를 즐겨 쓰며, 한편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최근 법무부가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용어에 대한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매일경제, 2018).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정부와 공공기관, 이용자가 통상적으로 쓰는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결제 수단을 지칭하고자 한다.

2017년 7월 31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에는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가상통화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 개정안(박용진, 2017)의 정의 방식은 블록체인의 특징적인 면만 개념요소로 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상통화의 정의 및 개념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개정된 것으로,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결제 수단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통화를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거래 일반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개정안이므로 그 정의 방식 또한 일견 받아들일 여지는 있다.

가상통화의 모든 거래는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 공유하는 분산형 장부를 핵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관계기관 합동, 2017)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는 참여자 모두가 모든 데이터의 이력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중개자 내지 중앙의 통제 없이 거래기록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P2P 방식의 거래는 사용자 대 사용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투명성은 모든 거래와 그에 관련된 값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각 노드(node)는 30여 자의 알파벳으로 된 주소로 가명화 되면서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넷째, 불가역성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계정에 그 거래가 생산되면 거래기록도 바꿀 수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적어도 과반 참여자의 기록을 바꾸면 기록이 바뀌게 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 시스템인 비트코

인에서도 하나의 거래가 처리되는 10여 분 동안 암호화되어 저장된 시스템 참여자 절반 이상의 기록을 변경하고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섯째, 컴퓨터화 된 작업의 블록체인 거래는 참여자들 사이에서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된다.

## 2.2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비트코인, 리플 등을 비롯한 가상통화의 법적성격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가상통화를 금전·증권·상품·금융상품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먼저 금전은 재화 교환의 매개물로 국가가 정한 물건을 가리킨다. 가상통화 또한 별도의 청산 및 결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금전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유통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전자화 된 정보의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개념의 금전으로 정의될 수 없다. 유가증권은 사권이 화체(化體)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통상·발생·이전·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 가상통화도 특정 재화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며, 특정 재화나 서비스 구매에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권 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가상통화는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물이며 별도의 권리나 청구권이 화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상통화 표시상품의 대가로 가상통화를 교부하는 것은 계약의 본지에 따라 지급이 되는 것이고, 상품을 구매할 대가로 가상통화를 지급에 갈음하거나, 지급을 위하거나, 지급을 담보하여 건네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상통화가 거래소에서 행하고 있는 방법과 요건은 유사하지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재산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지닌다. 가상통화는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만을 가지며 별도의 내재가치는 없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과도 차이가 있다. 가상통화 자체는 지급수단의 일종이며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리하면, 가상통화는 지급 수단으로서의 금전이나 화폐, 유통수단으로서의 유가증권, 거래 대상으로서의 상품, 투자대상으로서 금융투자상품, 가치의 저장 대상

으로 재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특정·포섭시키기는 어렵다. 굳이 다른 것을 찾아보면 가상통화는 금을 모델로 설계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실물자산인 금에 가까울 수 있다. 가상통화는 금과는 달리 내재가치는 없지만 그것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최고사양의 컴퓨터·장치 및 전기비용이 사용되는 전자적인 형태 내지 물건의 일종이다. 엄밀하게는 화폐, 유가증권, 금, 상품, 금융상품 등의 모든 속성을 가지는 ‘복합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Table. 1은 화폐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의 화폐는 현행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상용화 되고 있다.

Table 1. Types of currency

Real Money
Metallic Money
Substitute Money
Credit Money
Electronic Currency
Virtual Currency

따라서 가상화폐 적용에 대한 현행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의 규명은 결국 현행법상 어떠한 개념에 가상통화를 포섭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 여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상통화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화폐이며,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규율을 받는다. 다만 가상통화의 구체적인 거래 상황이나 사정에 비추어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을 적용하고, 가상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며, 일반적인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민법, 상법에 적용될 수 있다.

### 2.3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성격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에 그 장이 되는 곳은 가상통화 거래소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다른 방법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나 온라인

지갑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방법이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법정화폐와 교환해 주거나, 가상통화 권리를 매수·매도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거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 된다(유립중앙은행, 2015). 가상통화가 디지털 재화라고 한다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이러한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업자’이다.(동법 제3호). 또한 사이버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되며 이때 사이버물은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는 취급·거래 형태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가상통화는 일반적으로 일련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고유인 ‘지갑주소’에 등록됨으로써 해당 지갑주소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만약 거래소에서 이용자들의 거래에 의해 이용자 각자의 관리·지배 하에 있는 지갑주소 간에 직접 가상통화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가상통화 거래소는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거래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래관여형 중개자’로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 직접 가상통화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의 거래 서비스 제공은 엄밀히 당사간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개를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때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를 취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직업 판매하기도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지배권 또는 취급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가상통화 거래소는 ‘준물권적’ 구조에 따른 지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며,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할 뿐이고 가상통화에 대한 지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통화를 취급하기 시작하여 ‘상장’하는 경우, 초기 거래는 필연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통화의 취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는 개업, 영업, 상장 심의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지위에 놓인다.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약관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 및 당사자 간의 의무·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나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최근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통신판매업자 지위를 일제히 포기하였다(한국경제, 2018). 통신판매업은 가상통화 권리 거래 구조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 약관에도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가상통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유하는지,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거래할 경우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빗썸 이용약관).

#### 2.4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

따라서 가상통화가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통화는 별도의 발행주체 없이 설계자가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발행되어 작업 증명서 절차에 따라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블록체인 기록상에 명시된다. 그러면 가상통화 보유자가 가지는 권리의 성격 내지 객체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민법상으로 권리는 물권과 채권으로 대별되는데 가상통화는 ‘무체물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배타적인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기 때문에 오늘날 물건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확대된 물건 개념에 디지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를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디지털 정보를 객체로 보는 입장은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중심으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반면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는 그것이 유체물이 아니며, 자연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제·재화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소 역할의 존재로, 법정통화와 가상통화 간에 거래가 가능한 객체가 되었다(곽윤직, 김재형, 2013). 이로써 디지털 정보도 물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정보 내지 콘텐츠는 현

실에서 중요한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는 이를 담고 있는 물건 자체의 가치 및 내용으로써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정보통신망의 전달매체로서 무체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가상통화 역시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통화는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무체물에 담긴 기술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보호 대상으로서 민법과는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권리를 가지며 보호되어야 한다.

###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3.1 논의의 필요성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가상통화에 대한 권리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전산장애가 발생하거나 해킹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어떠한 구제 수단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주식 등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면, 투자자는 일정한 수익을 올릴 기회를 놓치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해킹 또는 전산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유형(관계기관 합동, 2017)은 첫째, 가상통화 거래소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가 해킹한 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 또는 법정통화를 탈취하는 경우, 둘째,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관하는 비밀키를 제3자가 해킹하여 가상통화를 탈취하는 경우, 셋째, 가상통화 거래소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적정 시점에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넷째,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에 예치한 가상통화를 탈취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산장애 중에서 주문기록(종목·가격·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전산장애로 인하여 주문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주문매수를 접수한 시점의 가격과 실제로 매수한 시점에서 생긴 가격의 차액은 통상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보안관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반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Table. 2는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거래 금액, 통화 종류, 보안 회사, 손해배상보험 등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 The transaction and security on the main virtual currency exchanges in Korea

	Bithumb	Coinone	Kobit
Transaction amount	572.6 billion won (on top of the world)	287.3 billion won (8th in the world)	147.2 billion won (11th in the world)
Transaction currency	9 types with Bitcoin	8 types with Ethereum	6 types with Bitcoin
Security company	SKinfosec	SKinfosec, Greyhash	Looking for a company
Insurance for damages	None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None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는 전적으로 이용자가 증명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특정가액으로 주문을 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은 법리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보안과 손해배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도 강제할 수 없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의무화된 기업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가상통화 이용자가 ‘이더리움 클래식’ 100개를 샀는데, 구매 당일 상한가인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접속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매매 타이밍을 놓쳤고 개당 20,420원에 팔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코빗’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가상통화 거래소를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처럼 원칙적으로 권리의무 위반과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 3.2 전산장애로 인한 수익기회의 상실과 손해 배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에 해당된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의 전체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전적으로 부정된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해킹을 당한 경우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가상통화거래소 운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적 책임을 받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전부냐 전무냐(Alles oder Nichts)’ 원칙이라 한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완전히 부정되어 배상책임이 일절 부정되는 경우, 원고에게는 너무나도 불공평한 결과가 강요된다. 그리하여 기회상실손해의 개념이 등장하였다(윤석찬, 2016). 이는 주로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관련된다.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서 환자 측의 입증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실한 기회’ 그 자체를 손해로 보아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논의가 있었다. 증권전산과 매우 유사한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서도 증권전산주식회사가 매매현황 데이터를 잘못 제공한 사안에서 유사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다. 오류데이터로 인하여 옵션·선물 거래의 투자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500만원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이다(대법원, 2006).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가 전산장애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매도 의사와 매도 가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익기회의 상실 면에서는 설사 매도 가격 자체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대의 평균가격, 수량 등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적 손해배상을 긍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현재 판례의 태도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에 착안하여, 이를 위자료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는 선에서 재산상 손해로 보고 있다.

### 3.3 가상통화 거래소의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가상통화 거래소 책임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계좌와 예치한 법정화폐를 해킹하여 탈취하는 경우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 당한 전산장애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던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 의하여 해킹 당한 경우에는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3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상에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손해배상규정을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에 판결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송을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패소 판결하였다.’ 이처럼,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소 책임자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하기 어렵다. 국내 관련 법류로 전자상거래법, 전자거래 촉진법에서 가상통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보완이 없어서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약관의 면책규정을 어떻게 보는지를 조항에 넣어 두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들은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면책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 4. 결 론

지금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였다. 가상통화의 용어 정리 및 개념을 정리하여 살펴보고,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가상통화는 금전, 유가증권, 금융투자상품 중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없고,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지급 수단이나 모든 속성을 가진 ‘복합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가상통화는 가치 변동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일종의 상품과 같은 형태로 거래에 집중되고 있다. 현실의 금전과 가상통화 사이의 안전한 거래를 담보할 다른 방안이 없는 이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정보와 통제가 집중되는 ‘신중양화’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가상통화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해당 기능과 유사한 수단에 적용되는 기존의 법리들을 참고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등 수많은 가상통화 거래소가 난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상통화 거래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래소들은 약관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는 등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 혹은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상통화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전산장애 발생으로 파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약관에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이용자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에 대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 권고하면서도 가상통화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 혹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수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그로 인한 논란도 증가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하여 국내 필요한 법률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다. 가상통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적 허점과 보안상 문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투기 성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적절한 법률상 규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거래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통화에 대한 상속, 권리, 재산분할 등과 같은 민사법적 문제에서부터 몰수, 범죄수익금에 대한 집행 등과 같은 형사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이면서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본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법적성격, 가상통화 보유자의 측면에서의 법적문제, 거래소 측면에서의 법적문제 등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 References

- [1]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Realizing the Potential of Blockchain," June, 2017.
- [2] Ministry of Science and ICT, (<http://www.msip.go.kr/webzine/posts.do?postIdx=261>) Apr, 2018.
- [3] Korean finance, "1470 people preparing for a class trial against the Bithumb……", ([http://www.ftimes.com/html/view.php?ud=201711151555142325902857eb1a\\_18](http://www.ftimes.com/html/view.php?ud=201711151555142325902857eb1a_18)), Nov, 2017.
- [4] Maeil Business Newspaper, "Code coin, virtual currency, virtual voucher, which one is correct?",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9764>), Jan, 2018.
- [5] European Central Bank (ECB), "Virtual Currency Scheme - A further analysis," Feb, 2015.
- [6] The Korea Economic Daily, "Virtual currency exchanges giving up telecommunications sales",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130430&t=NNv>), Apl, 2018.
- [7] Bithumb Terms of Use. ([https://www.bithumb.com/u/US106\\_P1](https://www.bithumb.com/u/US106_P1)), Mar, 2018.
- [8] Yun-jik Kwak, & Jae-hyung, Kim *General Civil Law* (9th edition), Park Young-sa, Dec, 2013.
- [9]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Judgment of Prosecution No. 2017-Giso-6436723," Judgment made on, Jan, 2018.
- [10] Seok-chan, Yun, "Legal Principles of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Loss of Use," *Property Law Research*, vol. 33, no. Jan, 2016.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10024867622>
- [11] Supreme Court of Korea, "Judgment of Prosecution No. 2004-Da-58109," Judgment made on June, 2006.

## 최 장 원(Jang-Won Choi)

[정회원]



- 2005년 2월 : Georgia College & State University MBA 졸업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0년 4월 : 덕인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0년 9월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2018년 9월 : 위덕대학교 초빙교수

<관심분야>

정보경영, 복지경영, 복지시스템